

예산성과금기준

제정 2011. 12. 15. 기준 제 17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타내규개정]
 [시행 2013.12.19.] [기준 제29호, 2013.12.19., 전부개정]
 [시행 2015.1.1.] [규정 제202호, 2014.12.22., 타내규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예산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예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출의 절약(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남게 된 경우
2. 예산편성과정에서 1천만원 이상의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규정 제19조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의 증대(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는 새로운 수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재단의 수입(재단채 발행 수입금과 차입금 등을 제외한 일체의 수입 재원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상 늘어난 경우
2. 재단의 자산이 1천만원 이상 늘어난 경우

제3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규정 제19조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단 임직원
2. 팀, 부서 등 재단 단위 조직
3. 재단 외부인 및 외부 단체 등

제2장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등

제4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算定)
3.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2.22>

1. 예산관리 담당 부서장
2. 경영평가 담당 부서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서장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예산관리 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⑤ 위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 당사자, 관계 직원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예산관리 담당 부서에

서 이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성과금 실무위원회) ① 예산성과금 신청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산성과금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관리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의 4급 이상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등

제9조(심사의 신청) ① 예산성과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예산관리 담당 부서에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심사) ① 예산성과금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결과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비심사의견서를 붙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며,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본 심사) ①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심의에 부친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성과금 지급을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예산성과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중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3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지출절약을 이유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후 예산

편성 및 예산배정 등에 있어서 지출절약액을 해당 사업예산에서 감액한다.

②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을 이유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부칙 <기준 제29호, 2013.12.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기준에 따른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202호, 2014.12.22>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산성과금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나눔경영이사”를 “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③부터 ㉓까지 생략

[별표]

예산성과금 지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예산성과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1건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text{예산성과금} = (\text{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times \text{기여율}$$

2. 실현금액별 지급가능액은 다음 표에 따른다.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지급가능액	한도액
1천만원이상 ~ 5천만원이하	실현금액 × 10%	500만원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500만원 + (실현금액-5천만원) × 6%	800만원
1억원초과 ~ 5억원이하	800만원 + (실현금액-1억원) × 2%	1,600만원
5억원초과	1,600만원 + (실현금액-5억원) × 1%	2,000만원

3. 기여율은 다음 표에 따른 창의성과 노력도를 합한 값을 백분율로 변환한 율을 말한다.

평가항목	평점기준				
	창의성	획기적 창의성	상당한 창의성	비교적 상당한 창의성	약간의 창의성
	50	40	30	20	10
노력도	전문적이고 대단한 노력	대단한 노력	비교적 대단한 노력	약간의 노력	단순한 노력
	50	40	30	20	10